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2023. 11. 29(수) 10:00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소관)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추병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53호
- 나. 제 출 자 : 엄셋별의원
- 다. 제출일자 : 2023. 11. 15.
- 라. 회부일자 : 2023. 11. 15.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문화 활동과 일상생활상의 최소한의 문화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라. 실태조사(안 제5조).
- 마. 문화안전망 자문단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 바. 지원 사업(안 제8조).
- 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문화기본법」 제4조, 제5조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 다. 입법예고 : 2023. 11. 16. ~ 2023. 11. 22.

5. 검토의견

가. 제정 이유

본 조례안은 금천구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문화 생활 및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의원발의 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나. 주요 내용

1)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금천구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2) 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계획 수립의 근거를 규정
- 제2항제4호에서 문화예술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항은 금천구의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정부, 서울시 등과 긴밀한 협조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실태조사(안 제5조).

4) 문화안전망 자문단 구성 및 기능(안 제6조 ~ 제7조).

5) 지원 사업(안 제8조).

- 문화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운영, 인력 양성 등의 지원사업을 명시함.

6) 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

다. 검토의견

○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함.

국민이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회 가치가 존재한다고 볼 때, 문화권에 대한 보장은 기본적 권리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화권 보장은 우리 사회가 겪는 각종 재난 등으로 인한 충격과 혼란을 치유하고 사회적 연대나 공동체적 지지선을 일궈내는 촉매가 되며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과 주민의 문화 향유를 함께 이룩해 가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문화안전망 구축이 문화생태계의 육성 및 우리 주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문화서비스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밑거름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관계법령

□ 문화기본법

[시행 2021. 9. 11.] [법률 제18379호, 2021. 8. 10., 일부개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17. 11. 28.>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화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財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관련 계획, 시책과 자원을 존중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의 해소를 통하여 균형 잡힌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문화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